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4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6인	1인

I. 회의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요일)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4년 12월 9일 서면통보)

II. 장 소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회의실(대진대학교 본관 3층)

III.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사(6 인) : 윤은도, 박광훈, 이태열, 김화옥, 김옥, 백학문
- 감 사(1 인) : 윤갑중

○결석임원

- 이 사(1 인) : 조태형
- 감 사(1 인) : 노기팔

○참석직원 : 임춘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간사)

IV. 부의안건

1.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
2. 대진대학교 행정조직 부서 명칭 변경 안
3.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안
4.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의결 안
5.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전임 교원 최초 재임용 안
6.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안
7.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8.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9.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임용 안
10.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원 정기 전보 안
11.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안
12. 분당대진고등학교 사무직원 일반 승진 안

간서명	김 옥	백 광 훈	윤 갑 중
-----	-----	-------	-------

V. 회의내용

윤은도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의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행정조직 부서 명칭 변경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윤 은 도
-----	-----	-------	-------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행정조직 부서 명칭 변경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대진대학교 융합전공지원센터를 융합교육지원센터로 부서 명칭 변경 함.

- 이상 (적용시기: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안’ 을 상정하며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문 감 중
-----	-----	-------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의결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이태열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의결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전임 교원 최초 재임용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백학문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이태열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윤 춘 환
-----	--------	-------------	-------------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에 대하여 백학문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전임 교원 최초 재임용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윤 은 도
-----	-----	-------	-------

윤은도 이사장 : 제7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7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백학문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7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백학문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7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3.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윤 은 도
-----	-----	-------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9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임용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원 정기 전보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0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옥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0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원 정기 전보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1호 의안으로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백학문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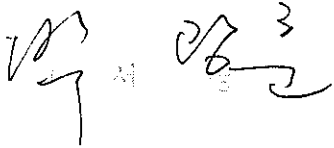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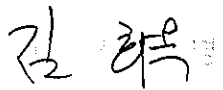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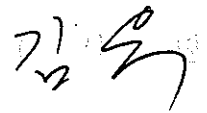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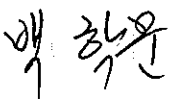

간서명	김 옥	백 학 문	윤 은 도
-----	-----	-------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

간서명	김 우	백 학준	윤갑중
-----	-----	------	-----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	사	장	윤	은	도	
	이	사	박	광	훈		
	이	사	이	태	열		
	이	사	김	화	욱		
	이	사	김		욱		
	이	사	백	학	문		
	감	사	윤	갑	중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규정 제정

AI대드론연구소 규정

AI대드론연구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연구소는 대드론(Anti-Drone)분야에 관한 학술활동/연구 및 사업수행을 통하여 대드론 체계 분석 등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방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의 드론 및 대드론 체계 분석 및 전략 분야 노하우 획득과 지적자산을 축적하고 미래신성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진대학교 부설 AI대드론연구소라 칭한다.

제 3 조(소재) 본 연구소는 대진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對드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개발, 국가 정책에 반영
2. 軍 연계 대드론 기술 개발·연구 및 실증, 접경지역 방호체계에 적용
3. 드론을 이용한 원격지 軍시설 물자수송 등 지역특성 사업개발 지원
4. 對드론 전문인력 발굴 및 인재 개발·지원, 지역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5. 對드론 분야(드론 포함)세미나 개최·유치 및 국제협력 추진, 전문기관으로 발전
6. 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제 2 장 조 직

제 5 조(기구)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6 조(임원)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자문위원 : 자문위원회를 구성

간 서 명	김 우	백 학 문	원 광 중
-------	-----	-------	-------

3. 간 사 : 1명

4. 연구실장 : 3명 이내

제 7 조(임원의 임무, 임명, 임기)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 반 업무를 관장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의 활동방향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이로서 교수급 이상 전임교원 또는 교외 인사 중 국방 및 대드론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운영 및 활동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이로서 부교수급 이상 전임교원, 또는 교외 인사 중 지역사회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전임교원 또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⑤ 연구실장은 박사 학위 이상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제 8 조(소원) ① 소원은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박사과정 재학 이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연구실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동등의 능력을 가진 실무경력자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조교 중에서 간사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사무원은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원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경비에서 지급한다.

제 9 조(일반회원) ① 연구소는 교내/교외에 있는 일반인 및 기업들로서 대드론(드론 포함) 연구에 관심과 참여 의향을 가진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일반회원은 연구소에서 행하는 강연, 세미나, 필드트립 등 행사에 초대되며 연구소의 발간물을 제공받는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평가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시행 세칙 안 의결
4. 예산 및 결산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및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매 학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간 서 명	김 욱	백 학 문	윤 갑 공
-------	-----	-------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 회원사 운영 지원비
2. 외부 수탁연구비
3. 본 대학교의 연구 보조비
4. 연구소원 및 회원의 회비
5.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

제12조(예산결산) 연구소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각각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연구비관리)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감사)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년 1회 이상 기획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 할 경우 그 재산은 대진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행정지원) ① 연구소는 매 학년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학년 말에 산학협력단에 연구활동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의 업무지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분	윤갑중
-----	----	-----	-----

초연결사회연구소 규정

초연결사회연구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초연결사회의 특성과 영향, 그에 따른 사회변화 등에 관한 조사와 학술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사회 대비 및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전대학교 초연결사회연구소 (영문명: Institute for Hyper-connected Society Research,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대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연결사회의 특성, 영향, 사회변화에 관한 조사와 국내외 연구사업 수주
2. 초연결사회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학술교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3. 기초 및 응용연구자료 수집 및 관련 학술지 발간
4.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5. 초연결사회 관련 정책 제안과 자문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연구소에는 기획실, 편집실, 연구실 등 전문분야별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사 : 1명
4. 운영위원 : 약간명
5. 편집위원 : 약간명
6. 연구교수, 연구원, 부연구원 : 약간명
7. 간 사 : 1명
8. 직원 및 조교 : 약간명

간 서 명	김 우	백 학 문	윤 작 공
-------	-----	-------	-------

제7조(임원의 임명)

1. 소장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연구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 및 운영위원, 편집위원은 본교의 교원, 또는 초연결사회와 관련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교수는 외부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본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5.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부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초연결사회에 관한 조사와 연구능력이 있는 인사를 소장이 위촉한다.
6.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7. 직원 및 조교는 본교의 임용규정과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제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기타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편집위원은 연구소 산하의 학술지 및 도서의 편집, 출판, 유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6. 연구교수, 연구원, 부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7. 간사는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직원 및 조교는 연구소의 일반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임기)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및 각 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분야별 연구실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12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간서명	김옥	백학문	윤갑중
-----	----	-----	-----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외 연구보조비, 연구소의 수탁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4조(보수,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외부에서 초빙한 임원과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2.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예산, 결산)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감사) 연구소 및 각 연구실의 금전출납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행정지원)

1. 연구소는 매 학기 초에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매 학기 말에 산학협력단에 연구 활동 및 사업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소의 업무지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제18조(세부사항)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갑동
-----	----	-----	-----

학교폭력심리지원연구소 규정

학교폭력심리지원연구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폭력심리지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학교폭력심리지원연구소"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연구소의 본부는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원 305호"에 둔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
2. 피해자 및 가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교폭력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4.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 교류.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5 조 (조직)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행정지원부, 연구개발부, 교육훈련부, 심리지원부로 구성한다.

제 6 조 (소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부소장 및 각 부서장)

1.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간서명	김옥	백학분	윤갑동
-----	----	-----	-----

1. 연구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각 부서장, 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연구윤리 및 관리

제 9 조 (연구 윤리)

1. 연구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활동에 있어 정직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2. 연구 결과의 발표 및 보고서는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며, 표절, 데이터 조작 등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한다.

제 10 조 (연구 관리)

1. 연구 과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장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 연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제 11 조 (비밀 유지)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 및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연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재정 관리

제 12 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보조금, 연구비 지원금, 기부금,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재정 운용은 예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집행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다.

제 13 조 (예산 및 결산)

1. 연구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간서명	김 우	백 학 본	문 감 농
-----	-----	-------	-------

제 5 장 인사 및 복무

제 14 조 (인사)

1. 연구소의 인사는 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모든 연구소 직원은 임명 시 일정한 시험이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5 조 (복무)

1. 연구소 직원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소의 명예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연구소 직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6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소장 또는 운영위원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17 조 (규정의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장의 결정을 따른다.

제 18 조 (부칙)

1. 본 규정은 대진대학교 소관부서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옥백	학부	윤갑중
-----	-----	----	-----

규정 개정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학점의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대학 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제18조의 1 (정원의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조 신설 2024.12.18.> 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의 전담학과의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기 및 수업일수, 졸업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주임교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임교수는 학과(부)장과 겸직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8.>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은	윤갑중
-----	----	-----	-----

직제규정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삭제 2025.01.01.>

제13조의 3(학생생활상담센터) <조 신설 2025.01.01.> ① 학생생활 상담을 위해 학생 생활상담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6급 이상의 팀장으로 보한다.

③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 4(인권센터) <조 신설 2025.01.01.> ① 인권신장,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②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학생성공처) ① (현행과 동일)

② 학생성공처에 학생성공팀, 학생복지팀, 종합서비스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취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01.01.>

③~⑤(현행과 동일)

⑥ <삭제 2025.01.01.>

⑦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과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학생성공처장이 겸하고, 팀장은 취업팀장이 겸한다. <개정 2025.01.01.>

제24조의 2(인성교육원) ①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원을 두며, 인성교육원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겸한다. <개정 2025.01.01.>

② <삭제 2025.01.01.>

③~④ (현행과 동일)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	우	백	학	분	윤	갑	중
-----	---	---	---	---	---	---	---	---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 2025.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진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교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 및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④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도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갑중
-----	----	-----	-----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⑥ “2차 피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2.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대화·통신을 시도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4.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5.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인권침해 등”이란 제2항부터 6항까지의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⑧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⑨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⑩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에 피해 발생 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⑪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⑫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 ⑬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⑭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⑮ “관련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⑯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장, 교원, 직원,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 등) 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신고된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인권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본교 재직 중 또는 재학 중의 인권침해 등의 행

간서명	김우	백학은	윤감홍
-----	----	-----	-----

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퇴직 또는 졸업(자퇴 포함)한 경우에도 그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의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5조(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의 임면과 임기는 본교 「직제규정」을 따른다.
- ②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의 업무와 이를 제외한 인권침해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등을 위하여 남녀 각 1인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둔다.

제6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② 사건관련인에 대한 보호 및 이에 필요한 조치
 - ③ 심의위원회 운영
 - ④ 심의위원회에 사건 조사 결과 보고
 - ⑤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⑥ 본교 구성원의 인권·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 ⑦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 ⑧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⑨ 인권침해 등의 유형, 판단기준,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 ⑩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재방방지대책 시행
 - ⑪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의 지원) 센터는 전문인력의 업무수행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인권센터 위원회) 인권센터에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심의위원회와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성평등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간서명	김우	백학은	윤갑중
-----	----	-----	-----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성평등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등의 사건 조사·심의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 4.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5.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
- ③ 위원장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성평등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성평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인권센터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2인, 직원(조교포함) 2인, 학생 3인(대학원생포함), 법률자문위원 1인,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사건처리를 위한 회의 때 당연직 위원, 법률자문위원,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추천직 위원(교원, 직원, 학생)은 사건 당사자 신분에 따라 관련 위원만 참여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성평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인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인권침해 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심의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 4. 인권침해 등 예방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5.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
- ③ 위원장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간 서 명	김 수 백	학 문	윤 강 동
-------	-------	-----	-------

- ① 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인권센터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직원(조교포함), 학생(대학원생포함), 법률자문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사건처리를 위한 회의 때 당연직 위원, 법률자문위원,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추천직 위원(교원, 직원, 학생)은 사건 당사자 신분에 따라 관련 위원만 참여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인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등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당사자가 소속된 학부(과), 부서 소속인 경우
 - 5.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을 거쳐 기각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 ④ 심의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 등의 사건처리 요청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간서명	김우	백학분	윤갑동
-----	----	-----	-----

3.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건처리를 위한 회의는 제11조4항과 13조4항에 따른 참여 대상자를 재적위원으로 본다.
- ③ 심의위원회 사안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회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6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신고의 기한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며, 그 외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 ④ 센터는 신고서를 받음으로써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사건의 조사 및 후속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신고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신고서를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⑥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은 제1항에 관한 사안을 상담 또는 서면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⑦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휴학·휴가·휴직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계부서에 처리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임시보호조치)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총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행위 즉시 중지
 2.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 및 접근·연락 금지
 3. 인권침해 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등에 대한 직무 배제

간서명	김 수	백 학 분	윤 감 동
-----	-----	-------	-------

4. 피해자 또는 신고인,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SNS 등 적법한 점유 및 가상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의 퇴거, 격리 등의 공간 분리
 5. 피해자의 학습권과 교권,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집단 따돌림,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누설 금지
 7.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 ③ 피신고인 및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8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6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4.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5.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6.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종결한 사건일 경우
 7.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 및 기타 센터의 관할 사건이 아님이 명백할 경우
 8.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처리)

- ①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 ③ 사건 조사 절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상의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④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감중
-----	----	-----	-----

제20조(조사의 방법)

-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1. 사건관련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요구
 - 2. 사건관련인,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사건관련인,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를 받은 사건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④ 신고 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관련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녹화할 수 있다.
- ⑤ 진술을 요구받은 사람이 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2항5호와 제12조제2항5호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률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조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위촉한다.
- ⑤ 조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를 담당할 센터의 구성원으로 한다.
- ⑥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를 개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 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조사 방법을 준용하되,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간서명	김우	백확분	윤갑중
-----	----	-----	-----

-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⑩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 ⑪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조정)

-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조정을 위하여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돕고, 가해자가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 ③ 센터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조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없다.
- ⑤ 센터는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조사의 종결)

-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 1. 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 2.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 기각)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기타 별도의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의결)

- ① 심의위원장은 보고 받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중재, 구제조치, 징계요구 등을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사건관련인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제

간 서 명	김 우	백 학 본	윤 갑 동
-------	-----	-------	-------

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간의 분리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조치
 - 2.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치
 - 3.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 ② 센터장은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히 실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요청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본 규정에서 정한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징계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장은 징계 처리 결정 및 징계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이 승인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중조치를 내리거나, 추가적인 징계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2차 피해를 끼친 경우
 - 2. 사건처리 중에 피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을 반복한 경우
 - 3. 피신고인이 재범인 경우
 - 4. 제17조 임시보호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26조 구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⑤ 징계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소속 기관에 사건의 조

간서명	김옥	백학문	윤갑홍
-----	----	-----	-----

사, 징계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사건관련인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

- ① 사건의 조사 및 절차는 사건관련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 수행자의 배제 그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피신고인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소명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 ⑤ 피신고인이 출석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고인의 출석 없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⑥ 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의)

- ①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건 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③ 인권위원회는 재심의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30조(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센터와 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사건조사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불이익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학습권

간서명	김옥	백학분	윤감홍
-----	----	-----	-----

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2.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집단 따돌림, 차별,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3. 그밖에 기타 불이익 조치

제32조(비밀유지의무)

-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관련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3조(자료열람)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센터에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관련부서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이를 제외한 인권침해 사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감중
-----	----	-----	-----

직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근신하게 하며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다만, 견책이 3회에 달한 자는 감봉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2. 감봉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3.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4.12.18.>
4. 해임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5. 파면 : 직원 신분을 제적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정직 처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제54조 4항의 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간서명	김후	백학분	윤갑중
-----	----	-----	-----

장학금지급규정

장학금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장학생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생 선발시 등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1.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2. 취득학점 교과목의 백분율점수 총점이 높은 학생
3. 전공(전필/전선) 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
4. 제1호~제3호가 같을 경우는 전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12.18.>

③~⑤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갑중
-----	----	-----	-----

규정 폐지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 (시행일)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2025년 01월 01일부로 폐지한다.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갑동
-----	----	-----	-----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가. 면직자

보직명	성명	직위	소속	면직일
인문예술대학장	이	교수		2024.12.31.

나. 보직 임명자

보직명	성명	직위	소속	임기	비고
인문예술대학장	최	교수		2025.01.01.~ 2026.07.31.	겸직

간서명	김우	백학분	유갑중
-----	----	-----	-----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학 과 명	초빙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대순중학과	대순중학	최		2025년03월01일 ~ 2027년02월28일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	최		
보건경영학과	병원경영	이		
에너지공학부	고분자공학	이		
IT기계공학과	CAD/CAE	구		
DNA플러스융합 기술전문대학원	수공학	장		

- 이상 6명 -

간서명	김 수 백 학 문	윤갑득
-----	-----------	-----

대전대학교 2025. 3. 1일자 전임교원 최초 재임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바이오헬스케어학부	홍		2025년03월01일 ~ 2031년02월28일

- 이상 1명 -

간서명	김수백	박문	문감중
-----	-----	----	-----

대전대학교 2025. 3. 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스포츠건강과학과	안		2025년03월01일 ~ 2031년02월28일

- 이상 1명 -

간서명	김우	백학문	윤갑중
-----	----	-----	-----

대전대학교 2025. 3. 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1. 재임용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장		2025년03월01일 ~ 2027년02월28일
교직과	김		
교양학부	김		
교양학부	김		
교양학부	김		
교양학부	임		
교양학부	정		

- 이상 7명 -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건축공학부	유		2025년03월01일 ~ 2027년02월28일
산학협력단	석		
산학협력단	이		2025년03월01일 ~2026년08월31일(정년)
산학협력단	이		

- 이상 4명 -

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인전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국제학부	박		2025년03월01일 ~ 2027년02월28일
교양학부	S:		
교양학부	M		

- 이상 3명 -

2. 면직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의전담]

소속	성명	생년월일	면직일
교양학부	엄		2025년03월01일
교양학부	원		

- 이상 2명 -

간서명	김	숙	백	학	문	윤	갑	중
-----	---	---	---	---	---	---	---	---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가. 학교법인 직종 전환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급 및 호봉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		일반직 9급 3호봉

- 이상 1명 (전환일자 : 2025년 01월 01일) -

나. 대진대학교 직종 전환자

현 부서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급 및 호봉
재무팀	윤		일반직 8급 3호봉
비서팀	천		일반직 9급 3호봉
학생성공팀	최		일반직 8급 3호봉

- 이상 3명 (전환일자 : 2025년 01월 01일) -

간서명	김 우	백 학 분	문 감 중
-----	-----	-------	-------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원 정기 전보

성명	생년월일	과목	현 재직학교	발령학교
최		국어	일산대진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 이상 1명 (전보일 : 2025년 03월 01일) -

간서명	김 우	백 광 문	윤 감 중
-----	-----	-------	-------